##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51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김현정·정성호·김동아

김한규 • 민병덕 • 김승원

최민희 · 정준호 · 박범계

문진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익배당은 결산 이후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즉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수개월 이후에야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임.

그런데 이 경우 투자자가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배당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다르고, 장기투자를 어렵게 하여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5조의1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1항 중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를 "말일부터 45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관"을 "이사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	
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u>말</u>	<u>말</u>
<u>일 당시의 주주에게</u> 이사회 결	일부터 45일 이내의
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	<u>&lt;삭 제&gt;</u>
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	
<u> 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③
이사회 결의일부터 <u>20일</u> 이내에	<u>1개월</u>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정관</u> 에	<u>이사회</u>
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